

투자설명서 변경 내용

□ 대상펀드명 : 트러스톤 백년대계50 자산배분 증권투자신탁[채권혼합-재간접형]

□ 변경 사유 : 제1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

□ 효력발생일 : 2018. 8. 24.

□ 변경 내용

항 목	정정사유	정 정 전	정 정 후
요약정보			
I.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보수(연, %)	제 1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	-	<u>2018. 6. 27. 기준</u>
II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정보 [1]. 투자전략 4. 운용전문인력	최근 기준으로 기재	2018. 3. 31. 기준	<u>2018. 7. 31. 기준</u>
II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정보 [1]. 투자전략 5. 투자실적 추이	제 1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	-	<u>2018. 6. 27. 기준</u>
III. 집합투자기구 기타 정 보 1. 과세	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	(2)연금저축, 퇴직연금 세제 혜택 : 연금저축계좌에 납입 한 400 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으로 12%에 해당하는 금액 을 당해연도 종합소득산출세 제외 ※ 지방소득세 별도	(2)연금저축, 퇴직연금 세제 혜택 : 연금저축계좌에 납입 한 400 만원 이내의 금액(근 <u>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1 억 2 천만원 초과</u> <u>하는 경우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300 만원 이내</u>)과 퇴 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산하여 연 700 만원 한도 로 12%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 에서 공제. 다만, 「소득세법」 제 59 조의 3 제 1 항제 1 호

및 제 2 호 규정에 해당하는
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
※ 지방소득세 별도
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

5. 운용전문인력 최근 기준으로 기재 2018. 3. 31. 기준 2018. 7. 31. 기준
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

한 사항 제 1 기 재무제표 - 2018. 6. 27. 기준
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 확정에 따른 갱신
되는 보수 및 비용

- 4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
대한 과세
공제제도 : 종합소득금액이
1 억원 초과(근로소득만 있
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 억
2 천만원 초과)하는 경우 연
간 저축금액 중 300 만원
한도로 12%에 해당하는 금
액을 세액공제)

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
관한 사항 소득세법 개정사항
나. 과세 반영

5) 퇴직연금제도의 과세
③ 세액공제 : 연금저축계좌
에 납입한 400 만원 이내의
금액(종합소득금액이 1 억원
초과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
에는 총급여액 1 억 2 천만
원 초과)하는 경우 연금저축
계좌에 납입한 300 만원 이
내)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
한 금액을 합산하여 연 700
만원 한도로 12%에 해당하
는 금액을 당해연도 종합소
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.



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

1. 재무정보	제 1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	-	<u>2018. 6. 27. 기준</u>
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	제 1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	-	<u>2018. 6. 27. 기준</u>
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실적	제 1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	-	<u>2018. 6. 27. 기준</u>
